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9. 25.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업무처리변경 및 상위법·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주민등록증 재질이 백지용지에서 플라스틱증으로 교체되어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관리조항을 삭제(안제2조제1항제1호)
- 나.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는 사하구사무의내부위임규정에 의거 동에서 위임처리하고 있으나 동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처리와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. (안제2조제1항제3호)
- 다. 주민등록 위반자 조치사항은 주민등록편람에 동장이 고발권자로 되어 있어 상위법 지침과 일치시키고자 함(안제2조제1항제4호)

3. 관계법령

- 가. 주민등록법 제2조, 제17조의 8, 제21조
- 나.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의내부위임규정 ('99.8.10 훈령제100호)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1.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등에 관한 사항

제2조제2항중 "제45조 및 제45조의3"을 "제43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권한의 위임) ①(생략)</p> <p>1. 법 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(이하 “영”이라한다)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.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, 징수에 관한 사항</p> <p>4.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</p> <p>②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제1항의 기타사무중 법 제18조, 영 제45조 및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 또는 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권한의 위임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삭제></p> <p>4. <삭제></p> <p>②----- -----제43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